



## 「2022년 10월29일 지방직 7급 시험」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및 해설(3)

| 김재준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### 17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·운용이 포함된다.
-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

정답 : ④

#### [해설]

지방자치법 제76조(의안의 발의) 제1항: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

### 18.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②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지방채는 「지방재정법」이 아니더라도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.

정답 : ④

#### [해설]

-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재정법 제12조(지방채 발행의 절차) 제1항: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제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### 2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- ②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·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.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
정답 : ②

#### [해설]

지방자치법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처리의 지도·감독) 제2항: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·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


\*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10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자료 및 질문은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 및 유튜브 '김재준 지방자치론TV'를 이용해주세요.

## 행정고시 합격자의 시크릿

# 단권화 행정학 김재준

## 2023 김재준 행정학

## 이론+문제풀이 All-In-One

- 개강 \_ 2022/11/09 [ 8주 ]
- 시간 \_ [수목] 14:00~18:00
- 교재 \_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기본서

## 김재준 9급 진도별

## 기출문제 540선 완전 정복

- 개강 \_ 2022/11/11 [ 8주 ]
- 시간 \_ [금] 18:30~21:50
- 교재 \_ 2023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문제집

**박문각 공무원** 노량진학원 02)815-7819, 3280-9990 | 온라인 02)3489-9500

